

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희걸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3054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2년 01월 21일
발 의 자: 김희걸 의원(1명)
찬 성 자: 경만선, 고병국, 김종무,
노식래, 문병훈, 오중석,
이상훈, 전석기, 정재웅
의원(9명)

1. 제안이유

-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개정(2021.7.6.)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3년으로 함(안 제19조의7).
- 나. 자연녹지지역 내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증축하려는 경우 건폐율을 30퍼센트로 완화함(안 제54조제15항).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- 다. 기타 : 신 구조문 대비표

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9조의7(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) 영 제50조의2제1호에서 “조례로 정하는 존치기간”이란 3년을 말한다.

제54조제1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⑮ 영 제84조제6항제8호에서 “조례로 정하는 비율”이란 30퍼센트를 말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신 설></p> <p>제54조(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) ① ~ ⑭ (생 략)</p> <p><신 설></p>	<p>제19조의7(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) 영 제50조의2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존치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.</p> <p>제54조(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) ① ~ ⑭ (현행과 같음) ⑮ 영 제84조제6항제8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30퍼센트를 말한다.</p>